

아리아리! 정선  
the mecca of arirang, jeongseon

# 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

# 군 보

<http://www.jeongseon.go.kr/>

**제367호 2015. 9. 1. (화)**

## 【규 칙】

- 정선군 규칙 제1257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..... 1
- 정선군 규칙 제1258호 정선군 환지정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 ..... 8
- 정선군 규칙 제1259호 정선군이장임명예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 ..... 14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24, FAX:560-2592)

# 규 칙

2015년도 제7회 정선군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심의·의결된 정선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9월 1일

## 정 선 군 수



정선군 규칙 제1257호

###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

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금융기관”을 “금융기관과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(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로 한다)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

제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
- 5.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협력사업비 운용 및 공개)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, 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.

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한다.

- 2.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공시한다.
- 3. 협력사업비의 세출예산은 특정사업에 편성한 경우에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.

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체결되어 있는 금고의 계약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【별표】

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 
(제5조제2항 관련)

항 목	세 부 항 목	배 점
계		100
	소 계	31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(10점) - 국외평가기관(6점) - 국내평가기관(4점) *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(10점)을 평가 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(21점) - 총자본비율(7점) *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정성, 7점)로 평가 - 고정이하여신비율(7점) - 자기자본 이익률(6점) - 원화유동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(1점) *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, 농·수·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름 * 금융감독원,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	
	소 계	18
2.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점) 나. 공공예금 적용금리(5점) 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(4점) 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(3점)	
	소 계	20
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	가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(5점) *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(7점) 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(8점)	
	소 계	22
4. 금고업무 관리 능력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(5점) 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(7점) 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등 전산처리 능력(7점) 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(3점)	
	소 계	9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(5점) 나. 군과의 협력사업계획(4점) *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"실적"으로만 평가, 군과의 협력사업은 "계획"으로만 평가.	

- ※ 각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1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.
  2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. 다만, 항목 2(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, 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)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.



여야 한다.

1.·2. (생 략)

3. 주민 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

4. (생 략)

5.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

②·③ (생 략)

<신 설>

제11조(금고운용 보고) ① ~ ③ (생 략)

<신 설>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

4. (현행과 같음)
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2(협력사업비 운용 및 공개)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, 법 제34조에 따라 세입 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.

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한다.

2.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공시한다.

3. 협력사업비의 세출예산은 특정사업에 편성한 경우에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.

제11조(금고운용 보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.

개 정 이 유

-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「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」가 2014. 12. 30. 개정되어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보완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- 금고지정 업무 취급 등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함(안 제2조제1호)
-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시 회계연도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가능 규정 신설(안 제4조제1항제3호)
- 협력사업비 운용 및 공개 규정 신설(안 제9조의2)
-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보고 규정 신설(안 제11조제4항)
- “별표”의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「행정자치부 예규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음.

2015년도 제7회 정선군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심의·의결된 정선군 환지 청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9월 1일

정 선 군 수

인

정선군 규칙 제1258호

###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

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”을 “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농어촌정비법」 제52조제5항에 의한”을 “「농어촌정비법」 제37조제5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본 환지청산금 취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”을 “이 규칙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41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”를 “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납부통지일로부터”를 “납부통지일부터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날로부터”를 “날부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 중 “일자”를 “날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제41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”를 “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단서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인가일로부터”를 “인가일부터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과오불”을 “착오지급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7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<u>농어촌정비법</u>」 제52조제5항에 의한 환지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환지 청산금 취급자(이하 “취급자”라 한다)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<u>본 환지 청산금 취급규칙</u>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장부의 비치와 기록)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5조(납부통지) ① 사업시행자는 「<u>농어촌정비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납부기일은 <u>납부통지일</u>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7조(징수금의 독촉)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⑤ 제3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</p>	<p><u>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농어촌정비법</u>」 제37조제5항에 따른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이 규칙----- -----.</p> <p>제4조(장부의 비치와 기록) ----- 각 호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납부통지) ① ----- -----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----- -----.</p> <p>② -----<u>납부통지일</u>부터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징수금의 독촉) ① ----- -----<u>날</u>부터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u>따</u>른-----</p>



<p>이 환불 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가산금의 처리) <u>제7조제1항의</u>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.</p>	<p>-----.</p> <p>제14조(가산금의 처리) <u>제7조제1항에</u> 따라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---	---

개 정 이 유

- 농어촌정비법 개정사항(인용 조문)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- 규칙 제명 띄어쓰기: “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”  
⇒ “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”
- 상위법령 개정사항 적용(안 제1조, 제5조, 제8조)
  - 제52조제5항 → 제37조제5항
  - 제41조제6항 → 제26조제6항
- 법제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어려운 용어 등 조문 정비

2015년도 제8회 정선군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심의·의결된 정선군이장 임명예관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9월 1일

# 정 선 군 수



정선군 규칙 제1259호

## 정선군이장임명예관규칙 전부개정규칙

정선군이장임명예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정선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명자격)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,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.

- 1.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
- 2.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 사람

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

제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제4조(임명절차 등) ① 이장의 임명은 해당 리의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읍장·면장이 임명한다.

② 리에서 읍장·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해야 한다.

1. 주민총회 회의록 1부
2. 전임이장 사직서 1부(이장 임기만료 시에는 미첨부)
3. 신임 이장 승낙서 1부

③ 읍장·면장은 이장을 임명할 때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제3조의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임명한다.

제5조(해임) 읍장·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리의 주민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.

1. 이장 본인이 임기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한 때
2. 임기 중 해당 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
3. 임기 중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
4.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해당 리가 통폐합되었을 때
5. 건강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
6. 리의 주민등록상 전 세대 중 2/3 이상의 세대주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

제6조(보고) 읍장·면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7조(임기 및 직무대행) ① 이장의 임기는 주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읍장·면장에게 그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.

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읍장·면장이 해당 리의 반장 중에서 책임자를 임시 이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개 정 이 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자치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- 이장 임명자격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이장 임명에 객관성을 확보  
(안 제2조 ~ 제3조)
- 이장 임명절차와 해임사항을 규정(안 제4조 ~ 제5조)
- 이장의 임기는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되 읍·면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  
(안 제7조)
-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어려운 용어 등 조문  
정비